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인

1

선거기사심의기준

[일부 개정 2016. 5. 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2. 선거기사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3.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

제3조 (심의고려사항) 위원회는 제2조의 심의기본원칙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4조 (공정성) 제2조제1호의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

는 기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5조 (형평성) 제2조제1호의 형평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6조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조제2호의 객관성 및 사실 보도의무를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기사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
4.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기사
5.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
6.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기사
7.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기사
8.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기사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7조 (정치적 중립성) 제2조제3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 또는 비방하거나 미화하는 기사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기사

제3장 세부 심의기준

제8조 (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9조 (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덧붙여 보도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 또는 변형시켜 편집, 게재한 경우 또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0조 (사진게재) 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 기사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1조 (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2조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4장 결정

제13조 (제재결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16. 3. 7. 규칙 제2016- 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 (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 (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 (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서면의결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 (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

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또는 주의
-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위하여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제재조치의 공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대상 언론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18조 (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반론보도청구

- 제19조 (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이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 (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 (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첨 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직업	
	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시 정 요 구 서				
시정요구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시정요구 대상	⑥ 언론사명 (매체명)		⑦ 대표자 성명	
	⑧ 주소 또는 소재지		⑨ 보도일자 및 지면	
	⑩ 보 도 내 용 (별첨 가능)		⑪ 전화번호	
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				
<p>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정요구인 : (인)</p> <p>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p>				
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 음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일부개정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 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

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 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 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

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

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

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 (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제108조의2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

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 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 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 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자명부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

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 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③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 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설 2014.2.13.>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 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의대상 매체현황

[2015년 12월 구독신청기준 : 총 371개]



1) 일간지 : 123개

중앙 일간지 (23)	종합일간지(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6)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지(6)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지역 일간지 (96)	서울(15)	서울매일,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이투데이, 일간투데이, 매일일보, 아시아타임즈, 내외일보,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브릿지경제, 이데일리
	경기, 인천 (20)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도신문, 경양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기호일보, 수도권일보, 수도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인천일보, 일간경기, 전국매일, 전국우리일보, 중부일보, 현대일보
	충북(5)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대전, 충남(8)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부산, 울산(6)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경상일보
	대구, 경북(11)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영남매일, 경안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북도민일보, 경상매일, 대경일보
	경남(7)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창원일보, 경남일보, 뉴스경남, 한남일보, 경남신문
	광주, 전남(9)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전북(9)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새만금일보, 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한라일보	
기타 일간지(4)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농민신문, 환경일보

2) 주간지 : 235개

지역 주간지 (217)	서울(32)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일보, 양천신문,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금천in, 노원신문,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은평시민신문, 종로저널, 동대문신문, 마포신문,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정신문, 은평신문, 주간 종로신문, 중앙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경기, 인천(32)	가평타임즈, 경기북부시민신문, 고양신문, 과천문화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북경기신문, 세종신문, 시흥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산타임즈, 안양광역신문, 여주신문, 연수신문, 용인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뉴스, 포천신문, 화성신문, 시사인천, 더 피플, 전국매일신문, 한복신문
	대전, 충남(18)	시사충청, 태안미래신문, 천안신문, 보령신문, 주간 온양신문, 충남신문, 서천신문, 놀외신문, 당진투데이, 서산타임즈, 주간 온주신문, 뉴스서천, 주간 당진시대, 주간 금산신문, 주간 예산신문, 공주신문, 홍성신문, 세종포스트
	충북(11)	영동신문, 옥천신문, 제천신문, 진천시사신문, 충주신문, 충청리뷰, 증평괴산저널, 음성뉴스, 음성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강원(14)	강릉신문, 주간 설악신문, 원주투데이, 강원리뷰, 흥천신문, 강원신문, 영월신문, 삼척동해신문, 횡성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북부신문, 강원가정복지·다문화신문, 철원신문사, 태백신문
	부산, 울산(6)	부산여성뉴스, 부울경인,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울주신문, 울산저널
	대구, 경북(21)	팔공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대구푸른신문, 청도신문, 군위신문, 고령신문, 칠곡신문, 성주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김천신문, 경북자치신문, 영주신문, 영주시민신문, 예천신문, 안동신문, 영덕신문, 울진신문, 울진마당, 영천시민신문, 경주신문
	경남(28)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신문, 거창韓신문, 경남여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뉴스사천,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산청시대,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름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뉴스, 함양신문, 합천대야신문, The 함안신문

광주, 전남(33)	시민의소리, 강진우리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시민신문, 목포타임즈,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남해안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영광신문, 완도신문, 우리군민신문, 전남중앙신문, 전남희망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해남군민신문, 해남우리신문, 화순군민신문, 화순일보, 굿뉴스피플, 전라도닷컴, 고흥타임즈
전북(20)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군민신문, 익산신문, 익산투데이, 정읍신문, 진안신문, 주간군산신문, 주간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해피데이고창, 시사전북
제주(2)	서귀포신문, 뉴스제주
종합 주간지(18)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주간한국, 시사IN, 일요시사, 일요서울, 일요신문, 사건의 내막, 민주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워치, 기자협회보,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뉴스포스트, 미래한국

3) 월간지 : 7개

경제풍월, 서울21,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폴리피플

4) 뉴스통신 : 6개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KNS뉴스통신, NSP뉴스통신

5

색인



1) 결정유형별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언론사	면
자체 심의 (55)	경고	2016국선-자심5	경북신문	79
	경고	2016국선-자심7	중부일보	93
	경고	2016국선-자심9	대경일보	99
	경고	2016국선-자심11	경인종합일보	118
	경고	2016국선-자심13	일간경기	123
	경고	2016국선-자심14	대구신문	128
	경고	2016국선-자심15	포천신문	132
	경고	2016국선-자심26	경안일보	143
	경고	2016국선-자심27	대전투데이	149
	경고	2016국선-자심28	경북매일	164
	경고	2016국선-자심29	현대일보	170
	경고	2016국선-자심30	경인매일	175
	경고	2016국선-자심35	일간경기	181
	경고	2016국선-자심36	현대일보	188
	경고	2016국선-자심37	전국매일	194
	경고	2016국선-자심39	나주신문	200
	경고	2016국선-자심43	기호일보	206
	경고	2016국선-자심44	서울매일	211
	경고	2016국선-자심48	경인매일	222
	경고	2016국선-자심49	강진우리신문	232
	경고	2016국선-자심50	도민일보	240
	주의	2016국선-자심1	파주저널	244
	주의	2016국선-자심2	반월신문	247
	주의	2016국선-자심3	충남일보	251
	주의	2016국선-자심4	경기신문	255
	주의	2016국선-자심6	부천신문	262
	주의	2016국선-자심8	현대일보	264
	주의	2016국선-자심10	대경일보	265
	주의	2016국선-자심12	경인종합일보	267
	주의	2016국선-자심16	매일경제	269
	주의	2016국선-자심17	한겨레	271
	주의	2016국선-자심18	거창한뉴스	272
주의	2016국선-자심19	전주일보	278	
주의	2016국선-자심20	전라일보	279	
주의	2016국선-자심21	강서양천신문	281	
주의	2016국선-자심22	철원신문	283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언론사	면
시정 요구 심의 (17)	주의	2016국선-자심23	아시아타임즈	285
	주의	2016국선-자심24	세계일보	286
	주의	2016국선-자심25	함양신문	287
	주의	2016국선-자심31	서대문자치신문	291
	주의	2016국선-자심32	시민일보	294
	주의	2016국선-자심33	경인매일	296
	주의	2016국선-자심34	서울동부신문	298
	주의	2016국선-자심38	전라일보	300
	주의	2016국선-자심40	울진신문	306
	주의	2016국선-자심41	아시아일보	308
	주의	2016국선-자심42	강남포스트	310
	주의	2016국선-자심45	영암신문	313
	주의	2016국선-자심46	일요서울	318
	주의	2016국선-자심47	양천신문	321
	주의	2016국선-자심51	선경일보	323
	주의	2016국선-자심53	문화일보	325
	주의	2016국선-자심54	종로신문	327
	주의	2016국선-자심55	연수송도신문	329
	권고	2016국선-자심52	남해시대	330
	정정보도문 게재	2016국선-시심17	파주in	333
	정정보도문 게재	2016국선-시심21	성동신문	336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1	한길뉴스	340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3	오산타임즈	348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4	일요서울	354
	경고	2016국선-시심11	국제뉴스	360
	주의	2016국선-시심2	거창군민신문	368
	주의	2016국선-시심6	뉴시스	372
	주의	2016국선-시심8	의정부소식	375
	주의	2016국선-시심20	반월신문	383
	권고	2016국선-시심9	내일신문	390
	권고	2016국선-시심10	포천뉴스	393
	기각	2016국선-시심5	포스트신문	402
기각	2016국선-시심12	홍성신문	407	
기각	2016국선-시심15	자치안성신문	409	
기각	2016국선-시심16	뉴시스	413	
기각	2016국선-시심19	동아일보	416	

2) 언론사별

구분	언론사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
자체 심의 (55)	강남포스트	주의	2016국선-자심42	310
	강서양천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21	281
	강진우리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49	232
	거창한뉴스	주의	2016국선-자심18	272
	경기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4	255
	경북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28	164
	경북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5	79
	경안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26	143
	경인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30	175
	경인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48	222
	경인매일	주의	2016국선-자심33	296
	경인종합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11	118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12	267
	기호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43	206
	나주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39	200
	남해시대	권고	2016국선-자심52	330
	대경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9	99
	대경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10	265
	대구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14	128
	대전투데이	경고	2016국선-자심27	149
	도민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50	240
	매일경제	주의	2016국선-자심16	269
	문화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53	325
	반월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2	247
	부천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6	262
	서대문자치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31	291
	서울동부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34	298
	서울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44	211
	선경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51	323
	세계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24	286
	시민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32	294
	아시아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41	308
	아시아타임즈	주의	2016국선-자심23	285
양천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47	321	
연수송도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55	329	
영암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45	313	

구분	언론사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	
	울진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40	306	
	일간경기	경고	2016국선-자심13	123	
	일간경기	경고	2016국선-자심35	181	
	일요서울	주의	2016국선-자심46	318	
	전국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37	194	
	전라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20	279	
	전라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38	300	
	전주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19	278	
	종로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54	327	
	중부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7	93	
	철원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22	283	
	충남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3	251	
	파주저널	주의	2016국선-자심1	244	
	포천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15	132	
	한겨레	주의	2016국선-자심17	271	
	함양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25	287	
	현대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29	170	
	현대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36	188	
	현대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8	264	
	시정 요구 심의 (17)	거창군민신문	주의	2016국선-시심2	368
		국제뉴스	경고	2016국선-시심11	360
		내일신문	권고	2016국선-시심9	390
		뉴시스	주의	2016국선-시심6	372
		뉴시스	기각	2016국선-시심16	413
동아일보		기각	2016국선-시심19	416	
반월신문		주의	2016국선-시심20	383	
성동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2016국선-시심21	336	
오산타임뉴스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3	348	
의정부소식		주의	2016국선-시심8	375	
일요서울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4	354	
자치안성신문		기각	2016국선-시심15	409	
파주in		정정보도문 게재	2016국선-시심17	333	
포스트신문		기각	2016국선-시심5	402	
포천뉴스		권고	2016국선-시심10	393	
한길뉴스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1	340	
홍성신문		기각	2016국선-시심12	407	